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에 제출

- 그 동안 추진해 온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(안)」이 지난 11월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.
 - 현행 자기주식 취득 등 재무 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관하고, 각종 법령의 선진화 작업 및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, 규제개혁 심사단 결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문정비에 필요한 사항도 반영할 방침임.
- 기존 입법예고(안) 대비 주요수정사항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 단축 및 헤지펀드 단계적 도입, 임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을 도입 등이 있음.
 - 금융투자업자의 영업, 재무 등 현황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는 금융위원회에 분기별 제출에서 월별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
 - 헤지펀드 도입에 있어서는 파생상품 투자한도, 금전차입,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 별도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감독체계를 구축
 - 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겸직하고 있는 두 회사 임원임기 만료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
- 아울러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발행예정금액 정정을 허용하고 법인의 사업보고서 공시시점을 조정, 금융위원회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 명령 등 기타 사항의 수정사항도 추가한다고 덧붙임.

(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11/10)